

교원인사 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1996. 9. 1.
개정 2000. 9. 1. 개정 2002. 3. 1.
개정 2007.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중앙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교원은 정관 제39조 제3항이 정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과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전임교원(호봉계약제/연봉계약제)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연봉계약제)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종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종류는 조교수로 한다.

④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외래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규정적용의 범위) 이 규정 제4조 이하는 대경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적용한다. 다만,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중 연봉계약제 교원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원과 외국인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겸직금지) 본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직 또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정년) 본 대학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제6조(인사발령의 효력 및 소급금지) ① 본교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교 교원의 인사발령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① 본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장 임용·재임용

제8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9조(임용기간 등)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혹은 신규임용의 경우 5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4.3.1.>

나. 부교수 : 5년.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 5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4.3.1.>

다.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 3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4.3.1.>

2. 급여 :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함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

4. 업적 및 성과 평가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채용 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가운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

1. 교수 : 정관 47조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6년 <개정 2013.7.1.>

3. 조교수 : 3년 <개정 2013.7.1.>

② (재직 중인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02년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2001.12.31 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

제11조(교원파견) 본교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학술 관련 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본교의 교원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97호)」에서 정하는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기본 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교원의 신규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운데서 행한다. 다만, 학부(학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전임교원이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산업현장 근무경력 소지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97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갖춘 자
- ② 교원의 신규채용은 학기 초, 학년 초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채용원칙)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관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 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④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신규채용 절차)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부/학과의 필요역량(특성)을 반영하고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개강의를 요구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② 제1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 ③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용절차) ①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교부한다.

-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2부
 2. 인사기록카드(명함판사진 첨부) 2부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부
4. 주민등록 등·초본 각 2부
5. 경력증명서(재직기관별) 각 1부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7. 대학원 학위증명서 1부
8. 최종학교 성적증명서(학부(학과), 대학원) 각 1부
9. 연구실적조서 2부
10. 연구실적 심사보고서 6부
11. 신체검사서 1부
12. 자격증,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13.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부착) 5부
14. 반명함판 사진 5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8조(교원의 경력연수산정) 교원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재임용) ① 교원 중 재임용대상자는 재직 중인 직급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소정의 교원업적 및 별도의 실적을 충족한 자로 하되 그 인정범위는 대경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이하 “교원업적평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은 제1항의 교수업적 및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0조(재임용의 절차) ①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임용의 기준) ① 재임용을 위한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정년트랙교원의 경우 연구 및 연수실적의 심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4.3.1.>

1. 현 직급 계약기간의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등급이 평균 E등급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
2. 현 직급 계약기간의 연간 평균 연수실적이 2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
3. 제 1호 및 제 2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 중에서 현 직급의 계약기간 중 교원업적평가의 종합판정 결과 E등급 이상인자에 한한다. <개정 2013.7.1., 2014.3.1>

구분	종합영역	비고
재임용	E 등급 이상	연간 평균

② 재임용 대상 교원이 전항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본 규정 제29조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원에 한하여 부족한 실적을 보충할 수 있는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이 기간 중 재임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재임용의 제한) 재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9조의 4를 준용한다.

제23조(재임용의 기간) ① <삭제 2014.3.1.>

② <삭제 2013.11.15.>

③ 제9조와 같다. <신설>

제 4 장 승진·승급

제24조(승진) ① 교원 중 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한에 달한 자로서 교수업적을 충족한 자로 하되 그 인정범위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 단, 승진심사 시에는 학교 기여도, 상벌사항 및 직급별 교원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조교수에서 부교수 5년 이상
3. 부교수에서 교수 7년 이상

②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한에 달한 자 중 교원업적평가결과(연간 평균)가 다음의 승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1.>

구분	교원업적평가	학교 기여도	상벌	직급별 교원상황
	종합영역			
승진임용	C등급이상	-	-	-

③ 교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 교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⑤ 교원은 계약기간 내에도 승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승진할 경우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신설 2014.3.1.>

제25조(특별승진) 교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 자
3. 본교 건학이념 구현 및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26조(승진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할 수 없다.

1. 강등·정직의 경우 18월
2. 감봉의 경우 12월
3. 견책의 경우 6월

제 5 장 연구실적심사

제27조(연구실적심사) ① 연구실적심사는 <별지서식 1> 연구실적심사조서에 의하여 동일전공분야의 교내외 교원 최소 3인 이상으로 행하되, 그 중 3분의 1이상은 타 대학 소속의 교원이어야 한다. 단, 신규채용을 제외한 연구실적심사여부는 총장이 판단한다.

②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에서 심사결과 B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는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

제28조(심사대상) ① 연구실적 심사대상은 본인이 제출하는 논문, 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으로서 심사일을 기준하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실적이 연구발표, 전시 등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은 반드시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학부(학과)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단,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학부(학과)가 변경된 경우, 본인의 전공 관련 논문도 인정하되 전보발령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제출된 연구실적물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박사학위논문 및 석사학위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제29조(인정환산율)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보 수

제3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신분보장

제31조(원칙)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명된 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휴직) 교원의 휴직사유와 기간, 휴직기간의 신분과 처우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3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4조(당연퇴직) 제17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제35조(직권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임명권자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 또는 본 법인의 각 기관을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방조할 때
4.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학생을 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제36조(휴직기간의 근속 통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② 제1항 이외의 휴직기간은 2분의 1의 비율로 근속기간에 통산한다.

제 8 장 복 무

제37조(복무) 교원의 복무는 교직원복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복무한다.

제 9 장 상 별

제38조(포상) ①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뚜렷한 공적이 인정될 때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총장이 심사·결정한다.

제39조(징계) 교원의 징계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